



정치의 사법화 시대 사법 저널리즘 고찰

민주적 법치 국가 요청과 사법 속의로서의 사법 저널리즘 비판

유용민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이 글은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이 갖는 제약을 사법을 둘러싼 공적 속의가 갖는 민주적 가치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을 쓰는 배경에는 사법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대로 인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사회정치적 국면에 대한 경험적 관찰 및 그에 따라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민주적 법치 국가 논의에 대한 이론적 주목이 놓여 있다. 사법 저널리즘은 사법을 둘러싼 공적 속의의 확장에 기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공중의 타당성 검토를 촉구해야 할 규범적 책무를 요청받는 반면, 그간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은 피상적이고 알팍한 '커리큘럼'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사법 속의의 전문화된 제도적 기제로서 심각한 제약과 편향에 머물러 왔다. 이 글은 또한 그에 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정면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한국 언론학, 특히 저널리즘 연구의 편향에 대해서도 따진다.

핵심어: 정치의 사법화, 사법 보도, 사법 저널리즘, 민주적 법치 국가, 사법 속의

* eudemonia@korea.ac.kr

1. 들어가며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정치적 국면은 정치의 사법화 개념으로 잘 설명된다. 협의의 정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사법 수단으로 해결되는 질서를 뜻한다(박은정, 2010a; 오승용, 2009; Hirschl, 2002, p. 224). 한국 사회의 경우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및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부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사회정치적 의제들이 사법 수단에 의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돼 가면서 정치가 해결해야 할 분쟁은 물론이고 사회적 논쟁과 합의로 다룰 사안들까지 모조리 법정으로 넘어간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에 관한 미디어 실천 전반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된다. 그러한 재인식이 요청되는 영역에는 사법에 관한 저널리즘 논의 또한 포함된다.

하지만 사법 현실을 다루는 저널리즘 실천에 관한 학술적 검토는 공중의 알 권리, 표현 자유, 명예훼손, 취재보도 윤리, 저작권 등 언론법제 분야의 주된 주제들과 견줄 때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왔다. 물론 사건보도, 범죄보도, 김·경 수사보도에 관한 저널리즘 논의와 비평은 맥을 이어 왔다. 그러나 법의 역할이 확대되는 거시적 추세에 주목해 사법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거나 하나의 총체로서 사법권력에 대한 저널리즘의 기능은 본격적인 논의의 주제가 되지 못했다(예컨대, 심석태, 2014b). 장승화(2007)는 “법의 지배 이념의 확산을 위한 노력의 주체로서 정부와 법조계의 역할은 당연히 강조되었으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역할은 직접 학문적·정책적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사법을 향한 저널리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는 이론적·실천적 논의가 두텁고 폭넓게 축적되지 못한 현실은 사법, 언론, 여론의 삼각관계를 활발히 검토하는 해외 학술 지형(e.g., Davis, 2014)과 비교할 때 더욱 부각된다.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 초 사이 진행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헌법재판은 법치주의(rule by law)의 부상을 알렸다. 각종 사회 갈등과 분쟁의 해결이 사법 수단에 의존하고, 중대한 사회정치적 의제들이 법 관료들의 법률적 판단에 의탁되는 사회적 국면의 부상은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공론 영역의 관계를 미디어와 소통의 맥락에서 학문적 분석 대상과 주제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제기한다. 사법이 정치적인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등 여타의 민주적 운영 원리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법적 인 동시에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기능과 역할 같은 주제

들이 질문되거나, 법원이나 법조 전반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에 대한 점검이 논의될 법도 하지만, 그에 관한 논의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사례의 경우에도 한편에서는 법치주의 승리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의 파국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여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사법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소통하고 토론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나 그에 관한 사회적 정보 확산과 여론 형성을 둘러싼 논의 또한 좀처럼 제기되지 않은 것 같다.

사법을 둘러싼 미디어와 소통 차원의 학술적 분석과 논의에 대한 요청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치주의가 반드시 바람직한 법의 지배라는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있다. 현대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고 사회 영역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 갈등과 분쟁 또한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법이 과거와 달리 더 많은 역할을 떠맡아 가는 현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사법이 사회 여론과 공동체의 정서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사법이 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해 가기보다 갈등이 더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더 나아가 사법 스스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을 포함하는 소통적 주체들이 사법에 대한 비판적인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법이 제도 정치와 더불어 민주적인 사회 운영 원리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을 둘러싼 공적 속의가 활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감시 기능이나 공적 포럼 형성 등이 요청된다. 그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나 사건 보도에 과도하게 치우친 법조 보도의 틀에서 벗어나 법원과 재판, 그리고 사법 그 자체를 비추고 심문하는 언론 보도 영역에 주목하는 시선의 전환부터 필요하다. 이러한 시선의 전환은 저널리즘 현장은 물론이고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학술 영역 모두에 요청되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언론이 사법을 둘러싼 사회적 소통의 합리적 형식으로서의 공적 속의의 중요한 토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이 갖는 논쟁적인 한계와 그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법 저널리즘은 그간 사법부, 준사법부, 그리고 민간 법조 비즈니스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법조보도 혹은 법조 저널리즘과 달리 ‘법원과 재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법적 현상과 이슈를 보도하는 저널리즘’ 영역 혹은 분야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¹⁾

1) 광의의 지시적 의미에서 사법 저널리즘은 사법부가 중심에 있는 사법 영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등 준사법적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현실을 뉴스로 다루는 언론의 뉴스보도 실천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글의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글의 배경이 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민주주의와 갖는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갖는 긴장을 드러낸다. 이를 토대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소하기 위한 사회이론적 배경으로 하버마스(J. Habermas)의 민주적 법치 국가 논의를 재조명한다. 그 이유는 사법에 관한 공적 숙의의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사법 권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지지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양가적인 실천 기제로서 사법 숙의의 필요성과 의의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사법 숙의의 제도적인 기제로 사법 저널리즘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한계 혹은 편향된 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법을 ‘소통적인 것’과는 본성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법에 대한 이해를 다면적으로 확장하는 인식론적 노력의 시도를 사법 저널리즘의 바람직한 변화와 개선의 출발점 중 하나로 강조한다. 미리 밝히자면, 이 글은 엄격한 논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2.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위기 논쟁

좁은 의미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공공 정책 등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사법 절차와 도구들을 이용해 해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오늘날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들이 사법 과정에 의해 해결 혹은 해소되는 흐름으로 폭넓게 정의되어 가고 있다(Hirschl, 2004; 2007; Koopman, 2003). 주어진 역할만 담당하는 사법 소극주의(judicial restraint)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법 형성 내지 법 창조를 추구하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개념과도 유사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 역할의 확대, 즉 법에 의한 지배의 확대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현상은 20세기 중후반 이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법 제도와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꾸준히 진행된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Domingo, 2004, p.107; Sweet, 2000; Tamanaha, 2004; Tate & Valinder, 1995). 박은정(2010a)은 한국에서 정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하여 사법 저널리즘의 의미를 사법부(법원)와 헌법재판(소) 등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법원과 재판 영역에 초점을 맞춰 쓰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용민(2017a), 윤성옥(2008) 등의 논의를 참조. 덧붙이자면, 사법 저널리즘이란 용어가 학술적으로 합의된 것인지는 이 글에서 답하기 어렵지만, 이 글이 사법 저널리즘과 관련한 현상을 엄격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해 검증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의 사법화가 대두되는 배경 요인으로 법 시스템 확대, 헌법 규범의 생활화, 기본권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성 증대, 국가와 시장을 향한 시민들의 불만족 및 시민사회 성장을 꼽는다.

사법의 부상은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흐름으로 비춰진다(Ferejohn, 2002; Gibson, 1989; Hirschl, 2004). 그러나 사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의 상승 이면에는 사회 갈등과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현대 정치 체계의 실패 혹은 한계 또한 자리 잡고 있다(Barzilai, 1999; Ferejohn, 2002; Guarnieri & Pederzoli, 2002; Tate, 1995)는 점에서 마냥 환영할 만한 일도 아니다. 사법의 역할이 부상하는 과정에는 곧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현실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영하거나 혹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보는 입장은 이 현상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majoritarianism)을 위배하며,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위협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축소시키고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한다(오승용, 2009; 오현철, 2006; Hirschl, 2002, 2004, 2008; Neier, 1985; Parker, 1993; Waldron, 2004, pp. 159-180). 더구나 선출직이 아닌 사법 관료들은 국민들로부터 그들을 대표할 권한을 직접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법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의 사법화를 긍정하는 입장은 이 현상이 민주주의 실패나 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완 혹은 확장한다고 해석한다(김종철, 2005; 차동욱, 2006a, 2006b; Friedman, 1998, 2003; Lane, 1996; Peretti, 1999).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 긍정론은 법에 의한 지배 그 자체를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치 또한 궁극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는 체제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의 역할 확대는 근본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정치의 사법화를 민주주의 발전의 지표로 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론은 자연스럽게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전망을 보다 신중히 낙관해 가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박은정(2010a, 2010b)은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임을 인정하고, 정치와 법치의 관계를 갈등 일변도로 해석하는 자세를 지양하면서 이 현상을 매우 양면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를 강조한다. 채진원(2011)은 2000년대 이후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관계 논쟁이 별다른 실익도 없이 아카데미한 토론으로 소모됐다면서, 사법의 확장과 민주주의 각각이 갖는 가치가 민주주의 성숙에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유용

하다고 말한다. 비판 법학자 웅거(R. Unger)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표(vote)로도 작동되면서 법으로도 작동되는 체제라면, 민주주의와 사법의 불가피한 관계를 양자 간의 충돌로 이해하기보다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습을 정치와 법치 간의 끊임없는 혼합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osanvallon, 2008, pp. 230-242).

이러한 절충적 혹은 화해적 입장의 타당성은 오늘날 정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거스르기 힘든 현실에 주목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투표율 하락 등 대중의 정치 참여 저하, 정당과 유권자 간 유대 약화, 시민 문화의 파편화와 사사회(privatization)가 지속되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실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채진원, 2011), 좋든 싫든 민주주의는 사법과 공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바꿔 말해 사법과 정치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사법과 정치는 근본적인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내재한다.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정치는 다수의 의지를 공동체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성격이 강한 반면, 사법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기되는 질문은 정치와 사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3.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과 사법 속의

1) 민주적 법치 국가 이론에 대한 재조명

언론학에서 하버마스는 속의 민주주의와 공론장 모델, 그리고 담론 윤리학의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온 반면, 민주적 법치 국가 논의에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된 경우는 드물다.²⁾ 그의 민주적 법치국가 논의는 법치주의의 폐해 극복,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법과 민주주의의 조화, 민주적 헌정체제의 이론적 토대 제공 등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에 관한 논의에 유용한 사회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1992년 하버마스가 발표한 〈사실성과 타당성〉은 널리 알려진 그의 저술 중 하나지만, ‘담론적 법 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이라는 부제는 국내 언론학 문헌에서 언급된

2) 언론학 문헌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간략하고 수월한 요약은 박홍원(2012)의 논의를 참조. 법사회학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이상돈과 홍성수(2000)를 참조.

적이 거의 없다. 그는 이 저술에서 민주주의 이론과 담론적 법 이론을 통합함으로써,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형을 조명한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자연법(natural law)적 사상³⁾에 착근한 근대적 법 관념으로부터 탈피해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과 절차주의(procedualism)를 강조하는 상호주관적 인식론에서 법을 파악하는 법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작동 가능한 사회적 통합과 연대의 실질적 방식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이론적 기획으로 요약된다. 그는 사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법 논리 혹은 민주주의 원리 둘 중 하나로 치우치는 편향을 막음으로써, 법치와 민주주의 간의 긴장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하버마스는 후기 산업사회의 정당성 위기 분석에서 법은 정치, 행정, 경제 등 체계(system)의 여러 영역에 관여하는 매체적인(medium)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Habermas, 1975). 법은 사회의 여러 영역들을 연관시키고 통합시키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의한 기능적 연관 혹은 통합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 혹은 합의의 결과로 획득된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Habermas, 1987, pp. 226-227).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사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행위 규범을 확정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나 공감에 기초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은 법정의 판결을 통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지체시키지 않는 강제적인 성질을 갖지만, 그로 인해 판결 이후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이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하버마스의 법 이해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법철학 역사에서 주류를 차지한 자연법 사상은 물론 19세기 경험과학 발달과 함께 대두된 법 실증주의(legal positivism)⁴⁾ 모두에 대한 지양에서 출발한다. 그의 절차적이고 담론적인 법 이론은 법의 제정 및 적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논증 구조에 대한 이론인 동시에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법치의 민주적 정당화에 관한 이론이다. 법을 인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상호 간의 지위가 평등한 법 동료들이 모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논증을 통해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 자체다(Habermas, 1996, p. 467). 법 공동체는 사법 관료와 법조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3) 자연법 사상이란 일반적으로 법이 특정한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보편타당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기초하는 법 관념을 뜻함.

4) 법 실증주의란 법을 현실에 존재하는 법만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법철학 관점을 말한다. 법 실증주의 입장에서 법을 이데올로기, 도덕, 사회 정의와 같은 개념들과 연관시키기 어렵다. 법은 오직 존재하는 실정법으로 현실적이고 가능한 법을 중심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Kelsen, 1960/1999).

와 공론영역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의 자기 입법을 위한 공동체로 정의된다(Habermas, 1996, p. 153-160).

담론적 법 이론의 핵심은 법을 절차주의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관점을 채택한 이유는 근대 사회에 이르러 전통적 인식론이 직면한 한계 때문이었다. 사법의 정당성을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어떤 선협적인 진리나 가치로 환원해 추구하거나 혹은 순수하고 추상적인 법이념 혹은 법 이상(ideal)을 통해 구현한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 현대적 조건에서 법의 정당성은 종국적으로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 차원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법 그 자체의 자기 완결적 가능성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의사를 형성해 가는 절차적 차원에서 협상되고 합의되는 맥락에 위치한다.

그는 속의 정치, 보다 정확히 말해 중심부 정치체제(혹은 사법체제)와 시민사회의 자율적 연합체들로 구성된 주변부 체계가 서로 순환하는 이원적 속의 정치 과정을 통해 국민 주권의 절차적 정당화가 가능해지면, 헌법재판과 같은 장치는 민주적 속의 정치의 핵심 원리로 기능 가능하며, 그에 따라 법치의 대두에도 민주적 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법의 민주적 가능성을 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Lang, 2005; Zurn, 2009). 물론, 하버마스의 법 이론이 사법 권력을 대중주권(sovvereign people)에 직접 귀속시켜야 한다고 해석하진 않는다. 어디까지나 법 동료의 일원인 시민들의 자기 결정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화된다는 것이지, 단순히 사법이 다수의 의지나 여론에 복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의 정당화를 대중주권적인 형식으로 규정하면, 사법의 정당성은 또 다른 위협에 처하게 된다. 사법적 처분을 국민 법 감정, 대중의 공분, 사회 통념에 전적으로 맡길 때 그러한 위협은 커진다. 여론재판이나 여론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사법은 공론장에서의 자발적이고 비판적인 정치적 토의의 대상이다.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완결적인 가치 체계나 원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폭넓게 합의 혹은 공감해 가는 민주적 규범의 정당성에도 함께 열려 있어야 한다(Habermas, 1996).

그러나 그간 우리 사법 정책이나 제도 혹은 법원과 재판 운용이 공론 영역과 어느 정도 상호작용해 왔는지는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사법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사실상 최초이지만(이동희, 2015), 그나마 참여 범위는 권고적 효력에 제한되었다. 사법 시스템의 국민 참여 보장 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예컨대, 김대성, 2012; 박형관, 2012; 이부하,

2011). 이러한 상황은 사법과 여론이 활발히 소통해야 할 필요나 사법 시스템이 여론에 개방되어 있어야 할 필요를 뒷받침한다. 이는 사법이 여론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기보다 공론 영역과 사법 시스템이 상호 순환해야 할 필요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사법 속의 제 관점들과의 비교 검토

여론 혹은 공론이 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수렴되는 민주주의 정치의 주된 운영방식임을 강조하는 하버마스의 정치 인식은 정치, 사법, 그리고 시민사회와 생활세계를 포용하는 공론장 간의 내적 연관을 강조한다(김대영, 2002, 282쪽). 속의는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와 정치적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모두 망라하는 민주적인 대안이 된다. 그 가능성은 대부분의 속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기대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선스타인(Sunstein, 1988), 마이컬먼(Michelman, 1988), 애커먼(Ackerman, 1993) 등은 공화주의(republicanism) 전통에서 헌정주의와 정치적 시민을 연결하는 사법의 기능을 민주적인 것으로 재해석한다. 마이컬먼은 헌법재판 제도와 같이 사법이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이 민주주의 정치가 야기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고, 선스타인(1988, 1999)은 의회가 이익집단과 갖는 관계에서 시민들의 입법 요구를 외면할 때, 사법이 그러한 부작용을 감시하는 헌법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자유주의 전통에서 하버마스는 타당성 요청(validity claim)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 가능한 타당한 법을 검토하는 위헌심사와 같은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법, 즉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민주적 속의의 가능성을 찾았다. 드워킨(Dworkin, 1996) 또한 사법이 민주주의 정치와 동등한 관심을 시민들에게 부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⁵⁾ 일라이(Ely, 1978, 1980) 또한 비당파적인 법원이 과정 지향적으로 사법적 심사를 진행한다면, 사법이 대표성을 갖는 민주적 제도로 정당화될

5) 드워킨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 심사와 같은 사법 내부의 속의가 다수결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사법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월드런(Waldron, 1999)은 대중 참여적 민주주의하에서 사법의 역할이 확대되는 현상의 민주적 가능성에 회의한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항구적으로 작동하는 의견 불일치로 인해 어떤 형식의 속의든 다수제주의를 대신하기 불가능하고 설명한다. 즉,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법적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커(Parker, 1993) 또한 사법과 민주주의의 조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는데, 법치주의는 고도의 합리적·고차적 속의를 요청하며, 이는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이 근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주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본다.

수 있다고 본다.

숙의에 주목하는 이들 정치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법이 민주적 숙의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견을 모은다. 헌법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헌정주의는 법적인 헌정주의와 정치적 헌정주의가 모두 작동하는데(Bellamy, 2007, pp. 15-17), 사법에 대한 공적 숙의는 법적 헌정 질서와 정치적 헌정 질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양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 숙의의 가능성이 똑같은 형식이나 경로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의 논의에서는 시민적 참여에 의한 숙의가 사법의 민주적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되는 반면, 슌스타인, 애커먼, 마이컬먼 등의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에게 헌정주의의 민주적 가능성은 소수 판사들의 숙의 능력을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사법기관 엘리트들에 의존하는 사법 숙의를 강조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시민 참여적 숙의의 맥락을 간과하거나 사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 참여적 숙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김비환, 2007).

이러한 시선은 정치와 사법의 관계에 관한 국내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차동욱(2006a; 2006b)은 법 전문가들이 충분히 숙의한다면, 법치는 그 자체로 충분히 민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수결주의를 채택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사법의 정당성이 다수결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요청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법 전문가, 법 관료 등이 주축이 된 숙의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공정하게 발휘한다면, 민주주의가 더 원활히 작동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관들이 사적, 공적으로 특수한 계층과 특수한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지나치게 간과한다. 어쨌든, 그러한 입장에서 사법에 관한 공론 영역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은 부차적이다. 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나 요구⁷⁾ 등 시민들의 일상정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공론장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법에 대한 공적 숙의가 그들만의 리그, 즉 법 관료나 법조 전문가들만의 배타적인 숙의에 지나치게 편향될 경우 사법은 민주주의의 보완적 혹은 대체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대중 참여적 공론 영역을 공정한 사법 권력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이해한다면, 하버마스식으로 말하면, 생활세계의 공중들이 경험하

7) 가령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 신뢰가 훼손된다고 말한 바 있지만(오마이뉴스, 2009/10/5일자), 여론과 동떨어진 법원 양형이 지속되는 현실도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는 일상정치와 제도 엘리트들(이 경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담당하는 헌법정치 간의 단절 가능성은 커진다. 법의 지배를 시민들이 대화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일상 정치의 세계와 분리시킴으로써, 사법을 공중의 생활세계와 연계시키는 데 취약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버마스는 헌법을 민주주의와 화해시키는 이론적 선상에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가능성을 찾고 그것의 정당성 확보 방편으로 이원적 숙의 정치를 통해 시민 참여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포섭한다. 사법에 대한 공적 숙의가 심각하게 제약될 경우, 사법의 확대는 여론과의 활발한 소통을 전제하는 민주주의 본래 의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조건 내에서 정치의 사법화 또한 민주주의에 보탬이 되지는커녕 오히려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기획은 법과 정치의 연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로운 양립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이를 통해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서 부상하는 헌법재판과 같은 중대한 사법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법적·정치적 문제로 제기하며, 그에 따라 고전적 삼권분립 인식을 상호 견제적 유기성을 갖는 삼권분립으로 재규정한다(이영재, 2012; Kramer, 2004, p. 30). 이를 통해 정치사회가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의 장으로 이월된 사회정치적 과제들이 다수 의지에 굴복하거나 이념 집단들 간의 대결 구도에 포섭되는 ‘정치적 대화와, 법적 안정성과 이성적 논증에 치우침으로써 공동체와의 공감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법적 대화’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고, 정치와 이를 보완하는 법치 간의 연결고리로 해소되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예컨대, 장진호, 2015, 375쪽).

숙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현실에서의 숙의는 공론장으로 기능하는 언론의 역할, 시민들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등 다양한 기제나 형식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다. 사법 보도는 그러한 사법 숙의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는 사법 숙의의 맥락에서 사법 저널리즘이 갖는 한계적 지점들과 그 함의를 논의한다.

4. 사법 저널리즘의 재인식을 위한 탐색적 고찰

언론의 기능은 실증적 분석대상인 동시에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사법에 대한 언론의 규범적 기능은 사법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법 체계에 대한 비판과 감

시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구를 체계의 사법 실무와 순환시키는 공론장적 역할을 포함한다는 데에 있다(e.g., Christians, Glasser, Mcquail, Nordenstreng, & White, 2009).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서 오랜 기간 사법에 대한 언론의 공론장적 기능이 활발히 작동해 왔다고 말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어 왔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의 주된 감시 대상은 주로 정치권력이었다. 그 이유는 적어도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시기 이전 권위주의 시대에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에 예속됨으로써 자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이 사법 보도 영역의 전문성 강화, 사법 취재 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확실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실천적 변화를 스스로 거듭해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1) 사법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재인식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과 법 원칙들을 직접 체험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법원에서 재판관을 받거나 선고를 받는 일은 시민들에게 일생에 한 번 겪기도 쉽지 않다. 복잡한 절차와 제도, 추상화된 용어들과 엄격한 논증으로 조직된 사법 시스템은 생활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사법에 관한 제도 언론의 보도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2015년 사법정책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실제 한국 국민이 사법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주 경로는 신문, 방송, 포털 등 제도적 매체들이었다.

사법에 대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법과 공중을 매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에 관한 논의는 답하기 쉽지 않고, 그에 관한 논의들도 풍성하게 전개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보다 먼저 다른 국가 기구들과 언론과의 관계에 비해 사법부와 언론의 관계가 갖는 제도적 특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이 사법 속의 위치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출발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법 보도 연구에서 사법은 언론은 물론이고 공중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거리를 유지해 왔다(Davis, 2014). 사법과 언론의 상징적 원격성(remoteness)(Davis, 2014, p. 28; Larowe & Hoekstra, 2014)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개성(publicity)의 측면에서 사법이 갖는 제도적·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의회, 정당, 정부 등 다른 권력 기구들의 일상은 공중에 그 내막까지 날날이 공개되는 반면, 사법부는 외부에 덜 개방되어 있다(Davis, 2014; Greenhouse, 1996, p. 1538). 그 결과, 국민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사법 심사의 상세한 내용은 법률에 의해 상당 부분 보호받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즉각 공개되

는 측면도 적다. 사법부는 판결문 외에는 사법이 왜, 그리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사법 내부의 고민을 언론과 공중에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Dubeck, 2007; Graber, 2010; Slotnick & Segal, 1998, p.4).

한국 사회에서 사법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어떠한 간에, 이상의 경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은 언론, 그리고 공중과 멀리 떨어진 채로 지속되어 왔다는 일반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e.g., O'Brien, 1983; Slotnick, 1991). 이러한 설명은 미국 사법부나 한국 사법부나 크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사법 시스템에 국민 참여적 맥락을 서구보다 훨씬 늦게 반영하기 시작한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더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이고 배경 브리핑(background briefing), 인터뷰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과의 일상적 교감을 추구한다. 하지만 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국한하여 기존 법리 해석을 뒤집은 새로운 판례의 의미를 언론에 해설하거나 새로 도입한 사법 정책과 제도를 홍보할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언론과 공중을 찾은 경우는 드물다. 이로 인해 공중에게 가깝게 열려 있어야 할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제약된다(Davis, 2014, p. 21). 오브라이언은 이를 사법의 숙의적 고립(deliberative isolation)이라고 말한다(O'Brien, 1983).

저널리스트가 이러한 숙의적 고립을 뚫고 사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정보를 공중에게 제약하기란 쉽지 않다. 데이비스와 스트리클러(Davis & Strickler, 2000)는 법률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법을 잘 아는 저널리스트라 하더라도, 사법의 언어를 그대로 필사하는 것 이상으로 사법 내부에 깊이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한다.⁹⁾ 일부 연구자들은 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정보를 뉴스로 문서화하는 것이 법조 저널리스트의 역할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한다(Greenhouse, 1996; Slotnick, 1991). 이러한 지점은 한국 언론이 수행하는 사법 보도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언론들은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검찰청 출입 시

8) 정치인들의 일상은 그 이면과 내막까지 낱알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는 반면, 법조 엘리트의 경우 법조비리 등 중대한 공적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조차 그 신원과 내막이 상대적으로 덜 공개된다. 가령, 2016년 9월 5일자 <중앙일보> 칼럼 '판사구속 사진은 없는 이유'는 이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9) 물론 이러한 괴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될 부분이다.

점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스펙터클(spectacle)하게 재현하는 데 초(超)집중된 취재 관행을 반복한다. 그러나 정작 검경 수사 단계 이후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저널리즘이 그만큼 중요하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둘 중 하나로 짐작된다. 첫째, 대부분 재판에서 공판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언론이 타 언론사와 차별화된 보도 노력을 특별히 기울일 필요 자체가 없고, 이는 법원과 재판 취재에 대해 언론과 저널리스트들이 느끼는 매력을 반감시킨다. 둘째, 설사 언론이 특정 재판이나 법원 이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해도 법정의 이면과 사법부 내부를 파헤치는 취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정적으로, 기자들이 제한된 취재 자원의 한계 속에서 법리나 국내의 기존 판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사법적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 요인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사법 보도의 결과물은 대체로 검찰(수사)의 시선에 서서 사건을 중계·전달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유무죄 여부, 양형 결과, 그리고 사법부가 적용한 법리를 피상적으로 요약하는 재판 결과의 취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뉴스 속 내러티브의 기본 열개가 되는 사법 저널리즘의 빈곤한 형식 패턴으로 반복된다(이선민, 2003, 8, 18).¹⁰⁾ 그 결과 나타나는 사법 보도의 효과 중 하나는 사법부의 법 해석 혹은 법리 적용이 갖는 실효적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두고 활발히 논박하는 공적 포럼이 작동하기보다, 사법부 판결이 제시하는 법률적 규범의 실정법적 힘에 대한 물화(reification)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¹⁾ 물론, 그러한 효과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 한국 언론의 사법 보도가 혹은 사법에 대한 미디어 재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떤 효

10) 이러한 지적은 비단 사법 보도에만 해당되진 않는다. 오히려 한국 언론이 범죄를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데 치중해 오면서 형식적·피상적 객관주의 보도 관행의 지속해 왔다는 차원으로 확대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예컨대, 남재일, 2004).

11) 법의 물화를 가능케 하는 언론의 뉴스 생산 관행 중 또 다른 요인은 사법 사건에서 준사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을 신중히 구분하지 못하는 측면에도 있다. 가령 뉴스 기사에서 검찰이 내리는 ‘구형’은 법원이 내리는 ‘양형’과 신중한 구분 없이 관습적으로 쓰임으로써, 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법 위반의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사인> 2010년 1월 6일 보도 “구형이 선고보다 무서운 이유는”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전문 PD로 일하는 노광준 씨는 ... 우리 언론의 잘못된 재판 보도 관행을 지적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일방적인 검찰의 구형을 보도하면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측 변론은 무시해 버린다. 당연히 읽는 사람 처지에서는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나같이 구형과 선고의 의미를 구분하는 미디어 종사자도 혼동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 겪는 혼란은 더 클 것이다... 한국 언론이 검찰 수사나 검찰의 구형을 늘 관심 있게 보도하는 관행과 달리 미국 등 서구 언론에서는 검찰 구형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경우도 적고, 또 검찰 구형을 보도할 때, “형을 요구한다(request, demand, call, ask)”라는 측면을 분명히 적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구형과 재판 결과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 ...

과를 유발하는지, 그럼으로써 실제 사법이 사법 권력과 공중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지 혹은 양자를 격리시킴으로써 숙의적 고립을 야기하는지 등 사법 숙의의 맥락에서 한국 언론의 사법 보도의 여러 측면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상에서 탐색한 사법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몇 가지 기능적 한계나 그것을 둘러싼 요인들을 한국 사법 보도의 품질이나 전문성에 대한 일반화 가능한 비판의 근거로 직결시키긴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단정보다는 한국 사법 보도가 저널리즘의 전문화된 한 하위 영역으로 분명히 정립되어 왔는지, 달리 말해 저널리즘 장 내에서 법을 다루는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그에 따른 대처가 얼마만큼 형성돼 왔는지에 대한 측면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법과 언론의 역할 사이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구조적·문화적 편향을 돌아보는 데 보다 유용해 보인다.

사법 제도가 정착된 이래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빈도나 법조계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류 매체들의 법조 취재 관행에도 양적·질적 성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실례로 최근으로 올수록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기자가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상주해 있지 않은 취재처 운용은 거의 모든 매체들의 실태였다.¹²⁾ 이런 상황적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법조 저널리즘이든 사법 저널리즘이든, 법에 관한 저널리즘 장이 기능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분명한 자기 정립을 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치 보도, 경제 저널리즘, 환경 보도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사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다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연구자만의 주관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유사한 고민이 언론계나 법조계 양편에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광범(2001)은 한국 언론의 사법 보도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범죄사건, 형사사건 보도에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을 다루는 언론 활동의 편향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종합일간지에서 오랜 기간 법조 취재를 담당한 언론인조차 법원과 재판을 다룰 때조차 언론은 검찰 수사와 범죄자 처벌 유무에만 신경 쓰지, 법원의 의사결정과 법리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고, 그나마 최근에 이르러서야 재판, 법리, 사법부에 대한 고민이 모색되고 있다고 자기 고백한다(예컨대, 이범준, 2014).

12) 전통적으로 한국 언론에 있어서 주된 법조 출입처는 검찰과 대법원이었다.

저널리즘에 대한 학술 담론 내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서로 조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과 언론의 관계를 다룬 저널리즘 논의들은 거의 대부분 형사사건보도, 범죄보도, 사건보도의 맥락에 절대적으로 치중되어 있다(예컨대, 김정호, 2004; 김훈순, 2004; 문선아·김봉근·강진숙, 2015; 박용규, 2001; 손현정·이종혁, 2012). 이들 논의의 방향은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보도 대상의 법적 권익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보도의 선정성·자극성 등 저널리즘 품질로 논의가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법과 법치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하는 논의는 드물다. 재판이나 법원 보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예외적으로, 김정호, 2011; 김창숙, 2010).

물론, 최근 사법과 언론의 거시적 관계를 질문하거나, 법 관련 보도 분석에 대한 관심은 부분적으로 엿보인다(예컨대, 박성호·윤영민, 2016; 심석태, 2014a, 2014b; 유용민, 2017a, 2017b, 2017c). 예를 들어, 방송 법조보도의 뉴스 품질을 분석하는 박성호와 윤영민의 연구(2016)는 법조 보도에 관한 체계적 실증 연구가 최근까지 거의 시도된 적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법조보도의 맥락에서 뉴스의 성격과 관행을 분석하는 개념적 자원들 또한 탄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 보도의 분석 대상이 여전히 검찰 수사 단계에 생산되는 뉴스 기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아쉽다. 즉, 법조 보도의 분석적 초점이 검찰권이 행사되는 준(準)사법적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법조보도라는 명칭의 관습적 호명에 숨어 있다. 법조란 사실상 사법부, 검찰권, 경찰, 변호사, 특허, 세무 등 국가 및 민간의 법 실무 영역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법조 보도 범주는 입법 및 행정, 그리고 민간의 법 비즈니스 영역과는 구별됨은 물론이고 검찰 및 경찰의 기소 및 수사 영역과도 구별될 수 있는 사법(부)에 한정된 언론의 실천을 특별히 지칭하여 논의하는 데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사법을 다루는 저널리즘 실천은 법조 영역 내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떠맡고 있는 분화된 영역들을 분별 있게 인식할 수 있는 개념들로 지칭될 필요가 있다. 통칭 법조 보도라는 포괄적 개념은 법을 다루는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의 분석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사법(부)보도, 법원보도, 법정보도, 재판보도, 판결보도, 형사/민사보도, 헌법재판 보도 등 선택적으로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사법 저널리즘의 현실: 정치화된 사법 보도의 맥락을 중심으로

이상의 검토가 제공하는 함의는 언론학과 언론 현장 양편에서 사법(권력)이 작동하는 현

실에 대한 저널리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심도 깊게 형성되지 못한 저널리즘 현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법 저널리즘이 심도 깊게 인식되어 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곧 언론이 사법 현실에 덜 개입했거나 혹은 충분하게 관여하지 못했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간 한국 언론의 사법 보도는 그 반대 역할을 자임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정치화된 혹은 정파화된 사법 보도 관행(예컨대, 심석태, 2014a, 2014b; 유용민, 2017b)에 대한 주목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자는 정치화된 혹은 정파화된 사법 보도의 맥락을 법치주의의 이념화 효과가 갖는 문제점과 연관시켜 그 논쟁적 혹은 딜레마적 지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극적인 사법 사례가 터질 때마다 사법을 이데올로기 구도 아래 복속시키려는 제도 언론은 주류 언론이 실천하는 사법 저널리즘이 처한 현 주소를 요약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화된 사법 보도로 인해 사법이 이념의 아성으로 경직될 때, 언론은 사법을 언론 자신과 이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일시적인 여론의 심판 대상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사법에 대한 이념 대결적 구도가 언론에 의해 가속되면, 언론은 법의 지배가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를 기본 열개로 하는 자기 완결적이고 폐쇄적인 가치 체계로 경직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다음의 논의와 대조하라, 국순옥, 2015, 206쪽). 언론의 정치화된 보도 관행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비판적 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물론, 언론과 사법, 그리고 정치의 삼각관계는 그리 간단하게 설명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만 해도 그렇다. 주류 언론은 현재 결정 직후 극단적 지지에서 극단적 비판까지 이 사태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여론 지형을 그대로 표출했다. 대표적인 ‘보수지’ 〈조선일보〉는 현재 결정 직후 사설(“중북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다”)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적법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냈다고 하며 헌재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칭송한 반면, ‘진보지’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민주주의의 죽음, 헌법재판소의 죽음”)에서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를 저격했다고 하며, 헌재를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저주했다.

문제는 사법적 의사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간에 갈등하는 모든 세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장진호, 2015, 371쪽). 재판이 당파적·이념적 이슈라면 더욱 그렇다. 당사자 간 합의나 공감으로 결말이 나기보다 법적 논증에 근거한 승패 논리로 결론이 판가름되는 여타의 재판들도 크게 다르진 않다. 그로 인해 언론, 특히 정파 언론이 화살을 겨냥하기 쉬운 일차적인 대상은 사법부와 사법부 판결이 된다. 특히 정치의 사법화 사례에서 언론은 사법부 판결이 자신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비

판한다. 하지만 반대로 판결문 속에서 사법과 언론 간의 이념적 일치를 확인하면 언론은 사법부를 민주주의와 정의의 수호자로 치켜세움으로써 판결 자체를 정당화하는 극적인(dramatic) 뉴스 현실을 강화한다. 흥미로운 것은, 후자의 경우 정파 언론들은 정치화된 사법, 즉 사법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¹⁵⁾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나 논쟁 없이 넘어간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는 사법부를 비판하지 않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을 향해 정치적이라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 과정에서 사법은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적 운영 원리로 공고화되기보다, 이념으로 분열된 집단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정당화되거나 탈정당화되기를 왕복하는 헤게모니적 권력투쟁의 도구로 휘둘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라발(Maravall, 2003)은 사법이 정치적 의제를 처리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정치 엘리트들의 전략에 의해 나타난 상황으로 규정한다. 긴즈버그와 셰프터(Ginsberg & Shefter, 1990)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정치적 무기로서 사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법의 정당성 위기를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언론이라고 사법을 전략적으로 도구화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법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 이슈의 한 가운데에 오르내린 김영란 전 대법관의 지적은 정파적 사법 보도의 문제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사법 보도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사법 속의 측면에서 성찰하게 한다. 그녀는 한국 사회가 법을 토론하는 방식은 ‘법원 판결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한다(권혜진, 2015, 11, 16). 그로 인해 왜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럼으로써 한국 사법이 드러낸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발전의 지점을 모색하는 사법 담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 언론의 수준 탓이라기보다 한국사회 사법 담론 전반의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정파적 사법 보도 관행에 갇들어 있는 사법에 대한 극적 반대 혹은 극적 지지라는 이분법적 형식을 빈곤한 사법 저널리즘의 한 단면으로 은유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요구된다.

정치적 관점에서의 사법 보도가 갖는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파화된 사법 보도는 특정한 사법이 행사하는 권력이 야기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15) 사법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사법적 의사결정이 정치적 영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을 지칭한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상호 연관된 현상이다.

으로써, 그 단점이나 부작용을 비판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언론이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right)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사법부가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치우쳐 있는 조건에서 미디어에 의해 그 반대 가치나 이념이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과 담론적으로 경합한다면, 사법을 둘러싼 이념적 담론 경쟁은 오히려 민주적인 값어치를 갖는다.

그러나 사법 보도가 정파적 시각과 이데올로기적 신념으로 채색되는 것은 사법 현상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돕고 공중으로 하여금 사법적 현상의 여러 측면들을 돌아보게 하는 데에는 편향을 야기한다. 만약 정치와 사법 중 어느 하나가 우위라기보다는 그 둘 모두 한국 사회의 중층적 심급으로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언론은 자신들의 저널리즘 실천을 통해 사법에 관한 정치화된 혹은 정파화된 대립 구도에 초점이 맞춰진 여론뿐만 아니라 법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대립하는 공론 영역의 창출 또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언론으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절제하고, 사법부에 대한 그 나름의 우호적인 보도 노력을 실천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옹호하되, 이데올로기와 가치만으로 손쉽게 재단하기 어려운 사법적 맥락이나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론화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가치나 이념에 의해 법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사법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경우, 법치주의는 결국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체제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특정한 정치적 신념이나 입장에 따른 언론의 사법 비판이나 감시가 제한되어야 한다기보다 그러한 보도와 별도로 법치적 맥락에서 사법 이슈나 사건을 다루는 보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앞서 언급한 사법 속의도 원론적으로 사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동시에 사법을 지지하기 위해서도 요청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다수결 원리를 토대로 하는 기관인 의회 권력이나 행정 권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사법이 떠맡고 있다’는 미 연방대법관 긴즈버그(R. B. Ginsberg)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법이 정치적인 기능을 일부 떠맡게 되었다고 해서, 사법이 곧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은 다만 사회 갈등을 법률적 수단, 절차, 규율, 문화에 의해 다루어 간다는 점에서 여전히 제도 정치와 다르다. 긴즈버그의 말을 언론을 향한 것으로 재해석하자면, 언론은 사법과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대화를 해 나가라는 주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짚을 지점은, 법에 대한 고민 이전에 법 실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 지식조차도 언론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부터 질문될 필요가 있다. ‘법을 잘 아는 언론’은 사법과 언론 관계에서 일찍부터 제기되었던 필요였다. 역사적으로 언론의 법 이해 요청은 법원과 법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실무적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50년대 프랑크푸르터(F. Frankfurter) 미 연방대법관이 〈뉴욕타임스〉 편집국에 부탁한 내용은 제발 출입 기자들에게 법 교육을 시켜서 보내라는 주문이었다(David, 1968, p. 52). 물론, 그러한 필요가 어느 수준에서 강조되어야 하는지, 혹은 기자의 법 지식이나 전문성이 실제 사법 보도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분석과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함의

2017년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법치주의가 가진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90여 일간의 재판 과정은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경험한 전대미문의 시간이었다. 이 경험은 언론과 언론 연구의 장에서도 중대한 의미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사건의 초기 발단에 언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한 논란도 새롭게 떠올랐다. 공영방송의 제 역할에 관한 논의도 있었고, 국가권력의 비리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몇몇 언론의 차별적 노력에 대한 평가도 뒤따랐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새로운 전망에 대한 논의 또한 있었다. 촛불 국면은 제도 권력을 압도한 광장 민주주의(square democracy)의 역동성, 민주적 시민 참여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해석들이 재조명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한 논의 지점들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대목 중 하나는 바로 법치주의의 부상이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사한 ‘사법권력’의 의미는 좁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며, 권력 또한 법의 심판 대상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한 사회가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의제들이 이제는 사법의 힘을 빌려 해결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구조 변동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극심했던 여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이 방증하듯, 그러한 과정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준비된 답은 없었다. 언론이라고 특별히 예외라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¹⁶⁾

매일 접하는 재판 보도나 사건사고 보도 속에서 법은 대체로 정형화된 이미지나 내러티브로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 취재에 치우친 법조 보도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재판과 판결, 더 나아가 사법 정책과 제도에 관한 보도 분야에서 특종이 터지거나, 사회 변화의 계기를 몰고 올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를 떠올리기가 힘든 것은 필자만의 사정은 아닐 것이다. 물론, 사법 보도의 영역은 그 본질적 성격상 정치 보도나 사회 보도에서와 같이 거대한 정치적 음모나 사회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 영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역동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정치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매우 신랄한 경우가 많지만 사법(부) 비판은 그렇지 않은 것도, 사법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공명정대하게 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언론의 사법 비판은 다양한 이유로 제약받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사법 보도의 소극적 모습이 사법에 대한 민주적 숙의의 맥락에서도 언제 어느 때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법의 역할이 확대되는 사회 변화 과정에서 사법에 대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뻔한 말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반론 앞에서 맥이 빠지거나 저널리즘을 향한 진부한 규범론(normative theories)의 공허한 반복에 불과할 수 있다. 그 대신 차라리 언론의 사법 비판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지, 언론의 사법부 취재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사법 보도의 품질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러한 실무적 논의로 곧바로 넘어가기보다 더욱 거시적이고 추상화된 수준에서 사법에 관한 저널리즘을 반추해 보고자 했다. 정치의 사법화 맥락에서 민주적 법치 국가라는, 철이 지난, 하버마스적 표어를 끄집어내 보고자 했던 동기가 여기에 있다.

민주적 법치 국가라는 표어는 그의 ‘공론장’ 개념만큼이나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성(ideality)을 지닌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론장 개념이 도달 불가능한 이상을 표상한다 해도 현실의 다양한 의사소통적 행위나 미디어 제도 및 정책을 규범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분석적 힘을 갖는 것처럼, 민주적 법치 국가라는 틀 또한 사법과 언론의 관계를 진단하고, 그 민주적 대안을 모색해 가는 데 유용한 규범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다수

16) 이와 관련 탄핵재판 당시 헌법재판소를 취재한 YTN 최두희 기자의 회고는 헌법재판과 언론의 낯선 조우를 잘 보여 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최두희, 2017, 3, 20): “사실, 매일같이 취재진이 상주하는 상황을 오랜 만에 맞닥뜨린 현재와 취재진의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 대부분이 보안인 데다 생소한 탄핵심판 절차와 낯선 용어는 취재진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함이 많았다. ... 무엇보다 탄핵심판 같은 생소한 절차를 이해한 기자는 아마도 적지 않았을까. ...”

결에 치우치기 쉬운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수를 보호하는 법치주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서로를 적절하게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때,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민주적 공동체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임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 또한 법 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가면서 법치의 타당성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야 하며, 이는 언론의 도움이나 지원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 사법 저널리즘은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법 담론이 단순히 이념적 입장에 따라 법원 판결의 찬반만을 놓고 다투는 양상에서 벗어나서 사법의 정당성을 숙고하는 바람직한 여론 형성의 계기와 조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파화된 사법 보도나 검찰과 범죄 수사에 치우친 사법 보도 관행 등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과 고민이 요구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주요 재판에 대한 TV 생중계 허용을 논의하는 등 국민 여론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사법부 분위기도 사법 저널리즘에 관한 이상의 고민과 무관치 않다.¹⁷⁾ 물론, 그에 관한 실천적 논의 과제들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한국의 사법 보도의 다양한 측면들을 저널리즘 이론과 언론 실무를 대조해 가면서 재점검하는 시도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법에 대한 이해’의 시선 확대 또한 사법과 언론의 거시적 관계, 사법에 관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 구체적으로 사법 보도의 여러 문제들을 사고해 가는 데 손해는 아니다. 법을 이해하는 관점을 풍부히 해 보면 그에 따라 사법을 둘러싼 공적 소통의 구조, 형식, 범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언론과 사법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시선 또한 다양하게 인식된다. 대표적으로 법을 ‘합리적 · 이성적 논증’으로 이해하는 패러다임과 거기에 대항하여 법을 ‘담론적이고 구성적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비판적 법 운동 진영(CLS)의 담론 패러다임의 대립 구도가 그 경우다.

비판적 법 운동 진영은 법을 대화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사법을 언어, 발화, 말하기와 듣기 등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법 패러다임을 제공한다(Condit & Lucaites, 1993, p. ix; Klare, 1979, p. 132; Lopez, 1994). 그들은 법을 엄격한 논증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대체하여 법을 법 공동체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구성하는 담론으로 재이해함으로써, 법리학(jurisprudence)에서의 담론적 전환을 이끌었다. 법은 수사이면서(White, 1985, p.697), 화자-청자 간의 대화(Eveline, 1997)면서, 언어로 조직된 내러티브(Bennett &

17) 지난 7월 대법원이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가 재판 중계를 확대하는 방향의 입장에 찬성했다(연합뉴스, 2017년7월18일자).

Feldman, 1981)이기도 한 것, 즉 대화적이고 담론적인 것이다. 최근 일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법 현상을 분석하거나(e.g., Gibson, 2007, 2012; Tell & Miller, 2012; Wood, 2005), 사법 보도의 성격이나 기능을 재서술해 가고 있다(e.g., Johnston & Breit, 2010).

미디어와 소통의 관점에서 사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사회 현상을 법이 아니라 소통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언론학의 처지에서 자칫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 법은 대화나 소통과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사법과 언론 관계의 논의는 사법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 사법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 사법에 대한 정보 공개의 측면에 대한 강조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 선에서의 만족은 법을 대화와 소통과는 대립되는 그 무엇으로 한정하려는 효과 안에 가두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한계는 적어도 사법이 민주주의 정치와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민주적 법치 국가라는 전망 안에서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렵다.

끝으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사법에 관한 언론 보도를 포함한 미디어 실천에 관한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도는 언론(혹은 미디어) 연구의 맥락에서만 아니라 사법 정보의 사회적 유통과 확산, 그리고 사법 여론 형성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맥락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참고 문헌

- 국순옥 (2015). 〈민주주의 헌법론〉. 파주: 아카넷.
- 권혜진 (2015, 11, 16). 김영란 전 대법관 “법 논리도 사회 변화 맞춰 진화”. 〈연합뉴스〉.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6/0200000000AKR20151116138400005.HTML>
- 김대성 (2012).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법학연구〉, 15권 1호, 185-213.
- 김비환 (2007). 아렌트의 정치적 헌정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1권 2호, 99-120.
- 김성해 (2016). 김영란법 보도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민낯. 〈관훈저널〉, 통권 141호, 18-26.
- 김영란 (2015).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파주: 창비.
- 김종철 (2005).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 정부 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3권 3호, 229-251.
- 남재일 (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호 · 윤영민 (2016). 방송 법조뉴스의 품질 연구: 정확성, 심층성,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0권 4호, 83-120.
- 박은정 (2010a).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51권 1호, 1-26.
- 박은정 (2010b). 〈왜 법의 지배인가?〉 파주: 돌베개.
- 박형관 (2012). 배심원 양형에 관한 쟁점 검토: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통권 90호, 41-74.
- 방현덕 (2017, 7, 18). 박근혜 등 재판 TV 중계방송 허용할 듯...20일 대법관회의. 〈연합뉴스〉.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177200004.HTML>
- 심석태 (2014a). 판결에 대한 비판,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관훈저널〉, 13권 2호, 1-30.
- 심석태 (2014b). 언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법부: 언론의 판결비판보도와 사법부의 언론자유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3권 2호, 1-30.
- 오승용 (2009).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 〈기억과 전망〉, 20호, 282-314.
- 오현철 (2006). 정치적 대표체계의 민주적 재구성 방안 모색: 속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와 NGO〉, 4권 1호, 145-176.
- 유용민 (2017a). 〈사법 보도의 뉴스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용민 (2017b). 헌법재판과 뉴스 프레이밍.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후 보도 프레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권 2호, 7-36.
- 유용민 (2017c, 발간 중). 재판보도에서의 법리적 쟁점 다양성: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주요 종합일간지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권 3호.
- 윤성욱 (2008). 사법 보도와 표현의 자유 범위에 관한 연구: 판검사가 제기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 420-444.

- 이광범 (2001).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 방안. <언론중재>. 통권 79호, 45-60.
- 이동희 (2015).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저스티스>, 146권 3호, 69-97.
- 이범준 (2014). 재판의 역할, 보도의 목적. <관훈클럽>, 통권 131호, 109-115.
- 이부하 (201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공법학연구>, 12권 4호, 113-135.
- 이선민 (2003, 8, 18). 법조 저널리즘은 없고 검찰 저널리즘만 있다.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2856>
- 이영재 (2012).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평화연구>, 2012년 봄호, 71-103.
- 이희은 (2010). TV 법정 프로그램에 나타난 법 이미지와 현실 구성: <실화극장-죄와 벌>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0호, 121-142.
- 장진호 (2015). <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파주: 한국학술정보.
- 차동욱 (2006a).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안티테제인가: 현대적 권력분립원리 하에서의 두 헌법기관의 관계. <의정연구>, 12권 2호, 183-221.
- 차동욱 (2006b).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헌법재판제도의 정당성. <정부학연구>, 12권 2호, 161-195.
- 채진원 (2011). 한국에서 분점정부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상관성. <국가전략>, 17권 3호, 175-200.
- 최두희 (2017, 3, 20). 특집-살려야 한다 ⑤_현장에서-헌법재판소_‘두 번은 없어야 할 탄핵 열차도 중착역. <방송기자>, 35권, 16-17. URL: <http://reportplus.kr/?p=19661>

- Ackerman, B. (1993). *We the people (vol. 1): Found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zilai, G. (1997). Between the rule of law and the laws of the ruler.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9(152), 193-208.
- Bell, R., & Odysseos, P. (2002). Sex, drugs, and court TV?: How America's increasing interest in trial publicity impacts our lawyers and the legal system. *Georgetown Journal Of Legal Ethics*, 15(4), 653.
- Bellamy, R. (2007). *Political constitutionalism: A republican defence of the constitutionality of democrac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nett, L. W., & Feldman, M. (1981). *Reconstructing reality in the courtroom*.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ickel, A. M. (1962). *The l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2nd e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Christians, C. G., Glasser, T. L., Mcquail, D., Nordenstreng, K., & White, R. A. (2009). *Normative theories of the media*. Chicago,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Condit, C. M., & Lucaites, J. L. (1993). *Crafting equality: America's Anglo-African word*. Chicago,

-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ffey, K. (2010). *Spinning the law: Trying cases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New York, NY: Prometheus Books.
- Cripe, K. L. (1999). Empowering the audience: Television's role in the diminishing respect for the American judicial system.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6, 235-282.
- Davis, R. (2011). *Justices and journalists: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medi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R. (2014).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press. In R. Davis (Ed.), *Covering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digital age* (pp. 4-22).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R., & Strickler, V. J. (2000). The invisible dance: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ss. *Perspectives on Political Science*, 29(9), 85-92.
- Domingo, P. (2004). Judicialization of politics or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Recent trends in Latin America. *Democratization*, 11(1), 104-126.
- Dubeck, L. B. (2007). Understanding 'judicial lockjaw': The debate over extra-judicial activity.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82, 569-601.
- Dworkin, R. (1986). *Law's empir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 (1996).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lster, J. (Ed.) (1999).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y, J. H. (1978). Toward a representation-reinforcing mode of judicial review. *Maryland Law Review*, 37, 451-487.
- Ely, J. H. (1980).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erejohn, J. (2002). Judicializing politics politicizing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5(3), 41-68.
- Friedman, B. (1998). The history of the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part one: The road to judicial supremacy.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3, 333-433.
- Friedman, B. (2003). Mediated popular constitutionalism. *Michigan Law Review*, 101(8), 2596-2636.
- Gibson, J. L. (1989). Understanding of justices: Institutional legitimacy, procedural justice, and political tolerance. *Law and Society Review*, 23, 469-496.
- Gibson, J. L., Lodge, M., & Woodson, B. (2012). *The symbols of legitimacy: Thinking, fast and slow, about the US Supreme Cour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ew Orleans.
- Gibson, J. L., Caldeira, G. A., & Spence, L. K. (2003). The supreme court an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f 2000: Wounds, self-inflicted or otherwi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4), 535-556.

- Gibson, K. L. (2007). Judicial rhetoric and women's "plac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arwinian defense of separate sphere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71(2), 159-175.
- Gibson, K. L. (2012). In defense of women's rights: A rhetorical analysis of judicial dissent.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35, 123-137.
- Ginsberg, B., & Shefter, M. (1990). *Politics by other means: The declining importance of elections in America*. New York, NY: Basic Books.
- Graber, D. A. (2010).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8th ed.). Washington, DC: CQ Press.
- Greenhouse, L. (1996). Telling the courts story: Justice and journalism in the supreme court. *Yale Law Journal*, 105, 1537-1539.
- Guarnieri, C., & Pedrzoli, P. (2002). *The power of judges: A comparative study of courts and democrac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 (1975). *Legitimation crisis* (T. McCarthy, Trans.). Boston, MA: Beacon.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T. McCarthy, Trans.). New York, NY: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abermas, J.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W. Rehg, Trans.). Cambridge, MA: Pol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Hirschl, R. (2002). Resituating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Bush v. Gore as a global trend. *Guar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15(2), 191-218.
- Hirschl, R. (2004). Juristocracy-political, not juridical. *The Good Society*, 13(3), 6-11.
- Hirschl, R. (2007). *Towards juristocracy: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constitutionalis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irschl, R. (2008). The judicialization of mega-politics and the rise of political court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93-118.
- Johnston, J., & Breit, R. (2010). Towards a narratology of court reporting.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137, 47-57.
- Kelsen, H. (1960). *Reine Rechtslehre*. 변종필 · 최희수 (역) (1999). <순수 법학>. 서울: 길안사
- Klare, K. (1979). Law as praxis. *Telos*, 40, 123-135.
- Kramer, L. D. (2004). *The people themselves: Popular constitutionalism and judicial review*.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oopmans, T. (2003). *Court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 comparative view*.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e, J. E. (1996). *Constitutions and political theory*.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Larowe, N., & Hoekstra, V. (2014). On and off the supreme court beat: Differences in newspaper

- coverag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implications for public support. In R. Davis (Ed.), *Covering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digital age* (pp. 126-15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pez, I. F. (1994). The social construction of race: Some observations on illusion, fabrication, and choice.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Review*, 29, 1-62.
- Luberda, R. (2008). The fourth branch of the government: Evaluating the media's role in overseeing the independent judiciary.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22(2), 507-532.
- Maravall, J. M. (2003). The rule of law as a political weapon. In J. M. Maravall & A. Przeworski (Ed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pp. 261-301).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chelman, F. (1988). Law's republic. *Yale Law Journal*, 97, 1493-1538.
- Neier, A. (1985). *Only judgement: The limits of litigation in social change*.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O'Brien, T. (1983). Yes, but... *Judicature*, 67, 12-14.
- Parker, R. (1993). Here, the people rule: A constitutionalism, departmentalism, and judicial supremacy. *California Law Review*, 92, 1027-1044.
- Peretti, T. J. (1999). *In defense of a political cour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anvallon, P. (2008). *Counter-democracy: Politics in an age of distrust* (A. Goldhammer, Tra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Slotnick, E. E., & Segal, J. A. (1998). *Television news and the supreme court: All the news that's fit to air?*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lotnick, E. E. (1991). Media coverage of supreme court decision making: Problems and prospects. *Judicature*, 75, 128-142.
- Sunstein, C. R. (1999). *One case at a time: Judicial minimalism on the Supreme Cour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unstein, C. R. (1988). Beyond the republican revival. *Yale Law Journal*, 97(8), 1539-1590.
- Sweet, A. S. (2000). *Governing with judges-constitutional politics in Europ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amanaha, B. Z. (2004).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te, N. C., & Valinder, T. (1995).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London, UK: New York University Press.
- Tate, N. C. (1995). Why the expansion of judicial power?. In N. C. Tate & T. Vallinder (Eds.),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pp. 27-38).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Tell, D., & Miller, E. C. (2012). Rhetoric, rationality, and judicial activism: The case of Hillary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dvances in the History of Rhetoric*, 15,

185-203.

- Unger, R. M. (1976). *Law in modern society: Toward a criticism of social theory*. 김정오 (역) (1994). <근대사회에서의 법: 사회이론의 비판을 위하여>. 서울: 삼영사.
- Waldron, J. (2004). Judicial review and republican government. In C. Wolfe (Ed.), *That eminent tribunal, judicial supremacy and the constitution* (pp. 159-18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ldron, J. (1999). *Law and disagreem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J. B. (1985). Law as rhetoric, rhetoric as law: The arts of cultural and communal lif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2, 684-702.
- Wood, J. K. (2005). Balancing innocence and guilt: A metaphorical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s relying on victim impact statement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9(2), 129-146.

최초 투고일 2017년 6월 5일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14일

논문 수정일 2017년 8월 4일

Abstract

Critical Essay on Korean Journalism in Judicial Reporting in the Age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Yong-Min Ryu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This essay aims to provide a discussion to reflect on the field of judicial report in facing a changing legal reality in Korea. The background of this attempt comes from an emerging socio-political situation characterized as the increasingly expanding function and role of jurisdiction as exhibited b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situation raises a series of academic questions surrounding obvious need to have to recogni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judicial report or judicial journalism or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diction and media in line with a changing legal environment. In here, they can be understood as to redefine the role of judicial reporting of news media as the ambivalent means of public deliberation on jurisdiction not only to support, but also, often, to criticize its democratic legitimacy. To prospect the democratic possibility of jurisdiction as a substitutonal or supplemental role of politics in democratic society, the journalistic roles of judicial reporting should be enriched to mediate between legal system and the public. In this context, the previous practices of politicalized reporting on legal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obstacles to shed light on the normative roles and tasks of judicial journalism in democratic society more expansively.

Keyword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judicial reporting, deliberation